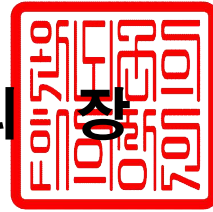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2. 발 의 자 : 조영식 의원
3. 제정이유

○ 완도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적용범위(안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안 제7조, 안 제8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9조)
- 지원 요청(안 제10조)

5.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2. 28. ~ 2024. 3. 5.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5,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1부.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 의장 귀하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완도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완도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옥외행사 중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경우 「공연법」에 따르고, 순간 최대인원 1,000명 이상의 축제·행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장소
2. 행사 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옥외행사의 경

우

⑤ 군수나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려는 경우 또는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시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군수는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4항 각 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